

수원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가단5218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양지환, 조성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66.96/2330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2. 2. 10. 접수 제17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9. 17.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5,745㎡, E 임야 864㎡ 중 각 3966.96/23306 지분(2021. 6. 16.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5,745㎡ 중 735㎡가 분할되어 F 임야 15,010㎡ 및 G 임야 735㎡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5.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24.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2011. 8.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9. 15.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6574호).

다. C은 2018. 9. 14. 원고와 사이에 '2018. 9. 1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1억 7,6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66.96/2330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8. 9. 1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의 채권자인 H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2. 11.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8. 9. 14.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C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0. 10. 접수 제159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가 2021. 5. 12.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5. 28.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8529호, 수원지방법원 2020나58366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마. H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21. 12. 23.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피고는 2022. 2. 1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21. 8. 20. C을 상대로 11억 7,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7. 1.‘ C은 원고에게 1,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21.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10.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074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를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21. 5. 28. 확정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1. 12. 23. 말소된 사실, C이 2021.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여 피고가 2022. 2. 1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C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도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인 H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여전히 수익자인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도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11억 7,600만 원의 채권의 존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074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C와 피고의 2021. 12. 28.자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는 위 매매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임야 15,010㎡ 중 3,966.96/23,306지분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임야 864㎡ 중 3,966.96/23,306 지분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임야 735㎡ 중 3,966.96/23,306 지분 -끝-

